



용역계약서

•계약명: 선행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

·계약기간: 2017년 07월 03일 부터 2017년 08월 31일 까지

∘금 액 : 금 일백육십오만원(₩ 1,650,000)

•계약당사자

- (A) 주식회사 이그쉐어 대표 : 엄 민 영
- (B) 노슨(NOHSN)주식회사 대표 : 한 철 민

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(A)와 (B)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 적) 본 계약은 (B)는 (A)가 요구하는 선행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.

제 2조 (지원대가의 지급) (A)는 (B)에게 선행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비용을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.

제3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 (신의성실) (A)와 (B)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(상호협조) (B)는 (A)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(A)와 협의하여야 하며, (A)는 (B) 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(B)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밀보장) (B)는 (A)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 비밀보장의 범위는 (A)와 (B) 상호간의 비밀유지 계약서에 따른다.

제5조(계약범위)

- ① "3D 초음파 태아 영상의 입체 영상 가상현실 경험을 위한 깊이 정보 추출"선행 기술조사
- ② "3D 초음파 태아 영상의 입체 영상 가상현실 경험을 위한 깊이 정보 추출"지식





재산권 컨설팅

제6조(계약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)

① 본 계약을 통하여 생성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대한 소유권은 (A)가 갖는다.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((A)의 해지) (A)는 (B)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 의 기간을 두고 (B)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((B)의 해지) (B)는 (A)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계약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(A)에게 이를 최고한 후,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③ (기타)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(A)와 (B)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 제8조(계약의 변경)(A)와 (B)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제9조(계약의 효력)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10조(해석)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11조(기타)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(A)와 (B)가 각각 1통씩 보관 한다.

20/1 년 <u>7</u>월 /3일

회사명(A): (국) C12和미 회사명(B): 노는 CNOH SN) 중 3 /

대 표(B):

多言的